

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## 진안에코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2019. 11.



**전북개발공사**  
[주택사업처]

# 진안에코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## 1. 주택공급 개요

### □ 기본현황

단 지 명	위 치	건설호수	비 고
진안 에코르 (10년 공공임대아파트)	·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85번지 일원	2개동 100세대	지하1층~9층 (발코니 부분확장)



### □ 공급대상

주택 타입	세대당 주택면적(m <sup>2</sup> )				계약면적 (계)	대지지분 (m <sup>2</sup> )	공급 세대	1층 세대수	입주 예정
	공급면적		그 밖의 공용면적						
	주거전용	주거공용	기타공용	지하주차장					
44m <sup>2</sup>	44.9823	19.5939	4.0340	13.6240	82.2342	61.7023	50	2	2020년 7월
59m <sup>2</sup>	59.9378	21.4939	5.3753	18.1537	104.9607	82.2177	50	6	
합 계							100	8	

#### [참고사항]

- 1) 면적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(m<sup>2</sup>)로 표기 (평으로 환산방법 : m<sup>2</sup> × 0.3025)
- 2)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, 주거공용면적은 계단, 복도, 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이고, 그 밖의 공용면적은 지하층, 관리사무소, 노인정 등
- 3)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이며, 구조는 벽식, 지붕은 평지붕임

## 2.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

### □ 임대기간

- 임대기간은 10년이며, 임대 종료기간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
-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

### □ 임대조건

-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, 정확한 금액은 2019년 11월말 공지될 모집공고문(www.jbdc.co.kr)을 참조하여야 함
- 변경계약 시 관련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증액될 수 있음

## 3.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### □ 신청자격 : 전라북도 거주자 [경쟁시 진안군 1년 이상 거주자 우선]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에 의거,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가 주택이 있으면 추천되어도 부적격처리 됨

#### 【무주택여부 확인대상】

- 기본적으로 ‘주택공급신청자(세대주,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’에 포함되는 분 들이며,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‘주택공급신청자’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

구 분	관련 법령	자격요건	추천기관
국 가 유공자	· 「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1호의2	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	국 가 보훈처
장기복무 제대군인	· 「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6호	·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	국 가 보훈처
북한이탈 주 민	· 「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9호	·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

구 분	관련 법령	자격요건	추천기관
철거민	• 「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12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</li> <li>•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</li> <li>•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 (고시가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) 한 자 등</li> </ul>	자치단체
공무원	• 「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16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」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자. 이 경우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 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.</li> </ul>	공무원연금공단
장애인	• 「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17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포함)</li> </ul>	자치단체
다문화가족	• 「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18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</li> </ul>	자치단체
한부모가족	• 「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」 제35조제1항제27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</li> </ul>	자치단체

○ 추천대상자별 청약통장

추천 대상자	청약통장 구비여부
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	-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 필요 없음
• 장기복무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, 공무원, 한부모가족	-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## □ 유의사항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아파트투유(apt2you.com)에서 청약 접수하여야 함.
-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(세대원),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불가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.(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)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2010. 2.23)이전에 “3자녀 우선공급” 및 “노부모부양 우선공급” 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.
- 노약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 중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고자 하실 경우 청약시 ‘최하층 주택 우선배정’ 에 체크하여야 함.

## 4. 주요일정

### □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요일정

구 분	모집공고	특별공급 대상자 추천	특별공급 접수	당첨자 발표	당첨자 서류제출	계약체결
일 정	'19.11.29.(금)	'19.12.06.(금)	'19.12.16.(월)	'20. 1.07.(화)	'20. 1.14(화) ~1.16(목)	'20. 3.11(수) ~3.13(금)
방 법	인터넷	추천기관 →전북개발공사	인터넷 신청	인터넷 확인 (개별조회)	방문 제출	계좌이체
장 소	·전북개발공사 (www.jbdc.co.kr)	-	·금융결제원 (www.apt2you.com) ※가입은행 구분없음	금융결제원 (www.apt2you.com) ※가입은행 구분없음	추후 통지	추후 통지

※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되는 「입주자 모집 공고문」 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첨부]

## 진안에코르 관련 추가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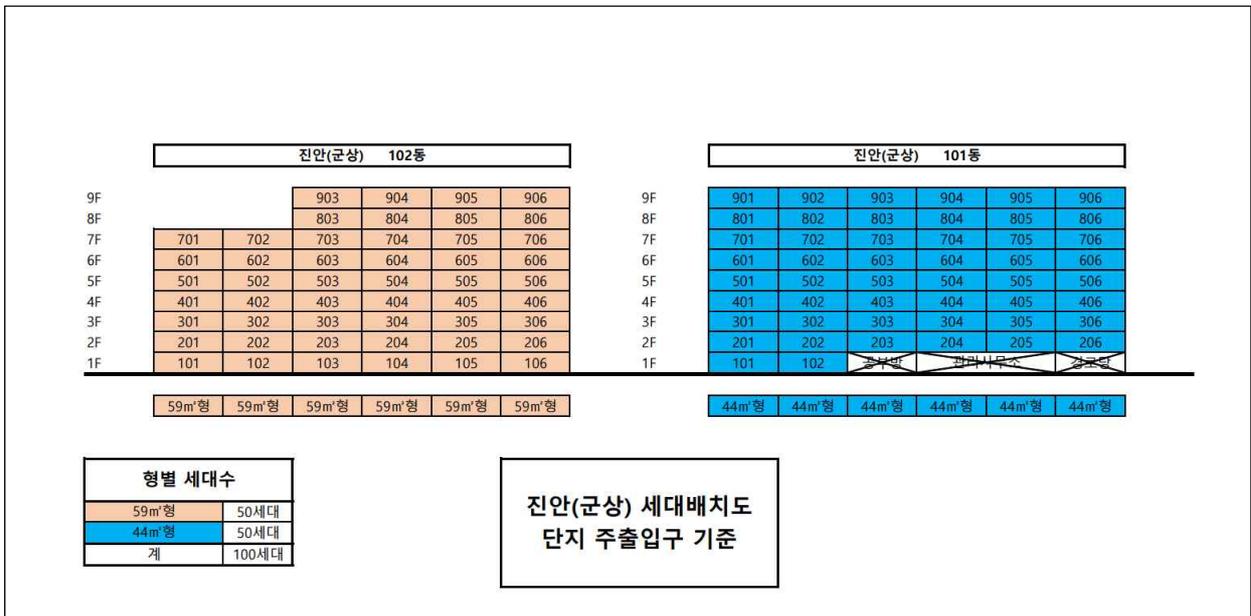
### 1. 위치도 및 조감도



### 2. 단지 배치도



### 3. 세대 배치도



### 4. 유형별 평면도

